

부천시서울·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1월 1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7년 12월 12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계획과장 우의제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“동 조례 폐지”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서울·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

의 번	안 호	제189호
의 년 월 일	결 정 일	2007. 12. 21 (제140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1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“동 조례 폐지”

- 첨 부 : 부천시서울·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
사업시행조례

**부천시서울·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
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**

부천시서울·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폐지
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현행 조례]

부천시서울·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
제정 1973. 07. 01 조례 제76호

개정 1974. 02. 01 조례 제11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·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사업의 규정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지구) 이 사업지구는 서기 1967년 11월 11일 건설부고시 제736호에 의한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변 오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한다.

제4조(사업의 범위)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구획 지목변경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 사업을 행한다.

제5조(기본면적)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면적은 서기 1968년 1월 30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.

1. 1968년 1월 30일이후에 있어서 신규등록 또는 그 분합된 날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

2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

제6조(토지가격평정) ①토지구획정리전 및 정리후의 토지가격평정은 위치 형상 고저 건설 면적 지가 교통의 편리수익 및 환경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.

②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가격평정을 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토지 예정지 가격) ①시장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그 지정을 변경 또는 정정하였을 때에도 같다.

제8조(환지교부) ①환지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면적을 표준으로 하여 종전의 위치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②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나 체비지에 있어서는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한 환지는 감보하지 아니한다.

제8조의2(환지 예정지 측량등) ①환지 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후에 환지 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과 측량도 교부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천시수수료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.

②전항의 수수료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

③전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하여야 한다.

제8조의3(측량대행) ①시장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사무 및 책임 한계 대행 수수료 보증금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9조(금전청산) 정리전의 토지면적 또는 평정가격이 근소하여 1택지로는 부족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.

제10조(청산금) 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금액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.

②전항의 권리금액이라 함은 권리면적에 종전위치에서의 정리후 토지평정가격의 단가를 승한 액으로 한다.

③전항의 권리면적이라 함은 표준면적에서 부담면적율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.

제11조(부담 면적)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필의 부담면적은 종전의 위치에서 당해토지의 정리전 및 정리후의 평정가격 및 설계도로의 복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정하는 일정 부담율에 의하여 산정한다.

제12조(분할 연납등) ①법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때에는 년 1할 2푼의 금액을 이자로 징수 또는 교부한다.

②전항의 분할징수 또는 교부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. 이 경우에 있어서 연체액이 있을 때에는 년 5푼의 연체 이자를 가산한다.

제13조(체비지 매각) 체비지 매각에 관하여는 그 토지의 위치 면적 평당가격처분방법 기타 필요사항은 시장이 이를 공고한다.

제14조(회계년도) 이 사업의 회계년도는 부천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15조(통지) 토지구획정리를 필하였을 때에는 환지 설명서의 초본을 지가배부시에는 지가배부서 초본을 첨부하여 관계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.

제16조(대리인신고) 이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산금의 납부수령 또는 서류 송달 기타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대리인의 거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7조(보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